

KOREA IPG

INFORMATION

issue

038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 2018.1

발행 : 한국IPG 사무국(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 지적재산팀)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하마기시 히로아키

편집 : 조은실, 유충현, 박성희



◎한국IPG의 활동

- 제19회 한국IPG세미나 ‘일본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 전략과 일본계 기업의 지식재산 대응’을 개최했습니다. 01
- 【대만IPG참가리포트】한국IPG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시킬 힌트를 얻었습니다. 04
- 2016년도 건의사항 결과 보고 05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6
- 「신 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7
- 한국의 전자소송 소개
- 어린이 발명교육에 주력하는 한국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새해 인사드립니다.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의 개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응원 하러 가시는지요? IPG Information에서는 올해도 IPG회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EW 한국IPG 회원 등록 & 한국 IPG 사무국

한국IPG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CAUTION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2018년1월2일부터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도 우선심사를 실시합니다. 우선심사를 실시하면 몇 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 여부에 대한 결정서를 받아 볼 수 있는지요?
 ①2개월 ②3개월 ③6개월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IPG의 활동

제19회 한국IPG세미나 ‘일본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 전략과 일본계 기업의 지식재산 대응’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IPG는 2017년 10월 31일(화) 서울시내에 있는 호텔 프레지던트에서 제19회 한국 IPG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일·한중일 특허청 회의를 위해 방한한 일본 특허청 국제정책과 노나가 과장님께서 일본 특허청의 국제지재전략에 대해, 스미토모 화학그룹인 동우화인켄 주식회사의 아키요시 부사장님께서 일본계 기업의 지재 대책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더불어 제트로 본부 지식재산 이노베이션부 다나카 부장님께서 제트로의 지식재산 지원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교류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 의견교환을 나눴습니다.

◎일본 특허청의 국제 지재 전략

- 일본특허청 국제정책과장 노나가 마쓰오

심사 신속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리소스를 다른 노력에 돌림

2004년, 일본 특허청은 출원에서 최초 통지까지의 기간(FA)을 10년간 약 30개월(당시)에서 11개월로 단축한다는 큰 목표를 세웠고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특허청은 심사 신속화를 위해 상당한 리소스를 쏟아왔는데 그 리소스를 다른 노력에 돌릴 여력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세계 5대 특허청(한중일미유럽 IP5) 협력 체제도 이제까지는 협력의 최대목표가 심사 신속화였지만,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유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심사한다는 ‘유저 눈높이’를 중심으로 한 협력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의 국제전개 정책(전체상)

상대국	대응단계	자리·틀 등			
선진국	제도·운용의 조화	WIPO회의	B+(선진국 그룹) 회의 IP5(특허), TM5(상표), ID 5(디자인), 삼극회의, 한중일회의	중일·한일 등의 양자 간 협력	경제연계 (TPP, RCEP, 한중일, 일본·EU 등)
신흥국	심사 신속화 지원	WIPO를 통한 협력 (재팬 펀드)	일본·아세안 특허청 회의		
	지재보호·집행체제 지원				
개도국	지재제도·체제정비 지원				

(출처) 발표자료에 의거 제트로가 작성

제도 조화의 이상형(패키지) 구축 사무국을 일본 특허청이 담당

일본 특허청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품질 심사 결과를 다른 나라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우수한 심사결과를 활용하고,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시, 일본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국제적 권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운용의 조화, PPH(특허심사 하이웨이) 등의 다양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도 조화는 각국의 제도가 다르면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특허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가 되지 않는 문제 등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통일하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각국은 자국의 제도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세계의 모든 유저가 논의를 해서 패키지를 만들고, 그 후 각국 특허청이 합의해서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의 사무국을 일본 특허청이 2017년 10월부터 맡게 됐으므로 앞으로 1년 동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면 세계 각국에서도 조기 권리 취득 가능

일본의 심사결과를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하기를 바라는 직접적인 제도로는 PPH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결과가 빨리 나오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결과를 이용해서 초기에 마찬가지로의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거둔 국제협력 성공사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최초로 PPH를 시작한 나라로, 세계에서 PPH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입니다. 일본 특허청과 PPH를 실시하는 특허청은 현재 40청(광역청을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 72개국·지역의 효과)까지 확대됐습니다.

신흥국·개도국의 지재 시스템 정비를 지원

신흥국의 의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재 보호뿐 아니라 지재 활용면에서도 일본 특허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특허청도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도 주목해 대응해 가고자 합니다.

일본 특허청은 아세안 지역, 인도,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특허 심사관을 비롯한 전문가 해외 파견이나 수용, 심사 매뉴얼 정리 등의 협력, 일본식 제도나 심사실무 등의 지재 시스템 보급, 정보화 지원 등을 통해 일본기업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지재제도가 세계에 확대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트로의 지식재산 지원에 대해

-제트로 지식재산 이노베이션부장 다나카테스야

제트로는 해외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도쿄) 및 한국을 포함한 9개국 해외 사무소에 지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1) 권리화 지원 (2) 권리보호·침해대책 지원 (3) 권리활용 지원 세 가지입니다.

제트로의 주요 지재 지원

(1) 권리화	①상표선행등록조사·상담 실시	②외국출원 지원	
	중소기업, 지역단체상표 등을 보유한 단체나 조합 등을 대상으로 상표한 개를 2개국·지역 혹은 상표 두 개를 1개국·지역까지 무료로, 현지 사무소가 유사상표까지 조사해서 선행출원 대책이나 출원절차 등을 보고서로 조언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 등을 해외에서 널리 활용하려는 전국의 중소기업 등에 외국출원 수수료,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 외국출원에 필요한 경비의 1/2을 지원(상한액 기업당 300만 엔, 출원건당 30~150만 엔)	
(2) 권리보호·침해대책	①모방품대책 지원	②방어형 침해대책 지원	③모인상표 무효 취소분쟁 지원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모방품 제조원이나 유통 경로 확인, 시장판매상황 등의 침해상황조사 및 일부 권리행사에 드는 비용의 2/3를 지원(상한액 400만 엔)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휘말려 방어형 침해대책을 취하려는 중소기업에 분쟁 비용의 2/3를 지원(상한액 500만 엔)	해외에서 제삼자에게 자사 브랜드의 상표나 지역단체상표를 모인출원 당한 중소기업이 상대방의 출원 및 권리취소를 목적으로 직접 제소하는 분쟁활동비용의 2/3를 지원(상한액 500만 엔)
(3) 권리활용	①지역단체상표의 해외전개 지원		
	지역 브랜드의 해외 확립을 통한 지역단체 참가기업 등의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전문 브랜딩 전문가가 한층은 지원 및 상품·서비스 현지 프로모션, 매칭, 상표권리활용까지를 지원		

그밖에도 지재보호와 관련된 여러 지원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재 관련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themetop/ip/>)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우화인켄의 지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동우화인켄 부사장 아키요시 요시로

동우화인켄 소개

스미토모 화학그룹 회사로서 1991년에 설립되어 한국 내에서 생산, 연구개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평택에서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주요 부품재인 편광필름과 칼라필터 등을,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반도체용 케미컬과 고순도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2017년 6월말)는 2,841명, 매출(2016년도)은 2조1,368억 원입니다.

지재교육을 전 사원에게 의무화

저희 회사는 정보전자화학 사업분야의 회사이므로, 연구개발한 제품의 권리 확보와 신제품이 다른 회사 등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patent clearance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직원들이 연구개발에 힘쓰고, 신기술로 승부를 보고 있으므로 지식재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의 지재 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중점추진사항을 소개합니다. 우선 전사의 지재 인식·역량 강화대책으로는 (1) 사내 지재교육 강화 (2) 정기 지재 뉴스레터 발간을 들 수 있습니다.

(1) 사내 지재교육 강화의 대상은 지금까지는 희망자, 신입사원, 일부 영업담당자였지만, 이를 사장 이하 전원에게 의무화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사외 전문가도 활용하면서 지재교육의 초점을 지재 리스크를 반영한 사업화 여부 판단능력 강화에 맞추고 있습니다.

(2) 정기 지재 뉴스레터는 2017년 5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월 1회 분야별로 다른 회사의 공개특허 소개, 법률 개정·신규 판례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개발방향을 예측하고, 지재와 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출원 심사청구의 등급화

강력한 특허망 구축 및 조기 권리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내출원을 안건별로 등급을 매겨서 심사청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연구원의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지금까지는 국내출원 심사청구는 연2회 지재실무회에서 결정했지만, 출원 안건에 대해 타사 또는 자사의 실현 가능성에 의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랭킹5’는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청구를, ‘랭킹4’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랭킹3이하’는 지재실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조기 권리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등급 평가는 연구원의 성과에도 반영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을 중시해 연구원을 평가했지만, 이를 ‘질’을 중시하는 평가로 바꾼 것입니다.

그룹사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대책

2017년에는 지재 시스템·체제 정비·표준화·지재 의식 강화를 위해 스미토모 화학 지재부의 지도 협력을 얻어 새롭게 지재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힘썼습니다. 우선은 스미토모 화학과의 지재업무 흐름 비교와 과거 업무를 리뷰해서 여러 과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액션플랜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우선 지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재 담당자가 스미토모 화학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회의에도 참관인으로 참가하게 해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법률사무소를 잘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저희 회사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전담 사무소를 분야별로 육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주체 사업부의 patent clearance에 대한 관여가 적었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의 관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별로 과장 이상의 지재 담당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patent clearance에 참가시켜서 개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토모 그룹은 아시아 정보부문 그룹사간의 지재 전략이나 전반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글로벌 지재 모임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지재 협력 체제도 강화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도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IPG 활동과 SJC 건의사항에 대해

-제트로 서울 부소장 하마기시 히로아키

한국IPG와 한국지재네트워크가 통합

한국 IPG는 재한 일본계 기업의 지재정보 교환그룹으로서 2010년에 발족했습니다. 회원은 재한 일본계 기업·단체 혹은 개인 등이며, 회원 수는 87개사 136명입니다. 한편 재한 일본계 기업의 일본 본사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예정인 일본 국내의 일본계 기업·단체 혹은 개인 등은 제트로 본부가 관리·운영하는 ‘한국지재네트워크’의 회원이며, 회원 수는 107개사 159명입니다. 2017년 11월에 한국 IPG와 한국지재네트워크가 통합됐으므로 앞으로는 재한 일본계 기업과 일본내 일본기업 모두 한국 IPG 활동을 합니다.

한국 IPG의 주요 활동에 대해

한국 IPG에서는 우선 모방품대책으로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진위판정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협력 하에 한국 IPG의 일본계 기업 분들에게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 주십니다. 2017년의 참가횟수는 5회이며, 참가기업에 따르면 세관에서의 감정 의뢰가 증가했고, 그 결과 위조품이 통관에서 걸리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타 모방품 대책으로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본계 기업 제품의

한국IPG의 활동

모방품 구입 방지 팸플릿 제작, 여행객 대상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일본인 여행객의 모방품 구입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IPG 세미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연 4회 IPG 인포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계 기업 한국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어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는 SJC(서울 재팬클럽)가 매년 일본계 기업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 IPG는 SJC의 지재위원회와 연계해 지재분야에 관한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트로 서울의 지원에 대해

한국 IPG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제트로 서울 지재팀은 주로 (1)조사보고·매뉴얼 작성 (2)지재 상담 지원 (3) 지재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 조사보고·매뉴얼 작성은 ‘한국 디자인등록제도동향조사’, ‘한국 지식재산 중재·조정 현황에 관한 조사’ 등의 조사보고서와 ‘삼성 개방특허 및 권고주요기술의 특허동향 조사보고서’, ‘모방대책매뉴얼’ 등의 매뉴얼을 매년 테마를 바꿔가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지재 상담 지원은 재한 일본계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할 예정인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 관련 법률이나 모방품, 영업비밀유출 등과 관련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제트로 서울이 계약한 법률사무소의 전문가를 통한 개인 법률 상담을 회사당 한 시간 정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지재 정보 제공은 한국 지재 뉴스를 매일 번역해 제트로 본부 내의 한국 지재 홈페이지(<https://www.jetro.go.jp/korea-ip>)에 게재하고, 뉴스를 모아 월 2회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각종 통계정보, 법령을 가번역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담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트로 서울 지재팀의 독자 도메인으로 운영된 홈페이지(<https://www.jetro-ipr.or.kr>)가 있었지만, 제트로 본부와 통합됐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올해는 그대로 남겨두지만, 새로운 정보는 통합된 제트로 본부 내의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만 실을 예정입니다. 

제트로 한국지재 홈페이지 소개
(<https://www.jetro.go.jp/korea-ip>)



페이지 하단은 5개 콘텐츠가 ‘탭’ 형식으로 전환되어 표시되도록 배치

한국IPG의 활동

한국IPG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시킬 힌트를 얻었습니다.



한국IPG활동, 한국 지재상황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일본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계 기업이 진출해 있고, 외국에서의 출원건수 1위는 일본일 정도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IPG와 대만 IPG는 현지 일본계 기업에 대한 지재지원방안이나 IPG운영체제에 관한 정보교환이 유


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만의 타이베이시 일본 공상회에서 개최된 ‘제35회 지재전략그룹회의’에서 제트로 서울의 하마기시 부소장이 대만 IPG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IPG활동, 모방품의 경향과 대책, 지재상황’이라는 테마로 강연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한국의 디자인 출원건수가 일본과 대만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점에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대만 IPG는 기업 주체 그룹회의 프로젝트 팀을 운영 중

대만IPG는 타이베이시 일본공상회를 모체로 2006년에 설립되었고, 지재와 관련이 깊은 11개 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위원회’ 이외에 지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기업으로 대만 지재에 관한 검토, 정보공유를 실시하는 ‘전략그룹’, ‘콘텐츠 그룹’ 및 ‘프로젝트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운영을 일본대만교류협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 IPG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지식재산전문가가 강연하는 ‘지식재산공부모임’을 연 4~5회, ‘지재전략그룹회의’, ‘콘텐츠 그룹회의’ 및 ‘프로젝트팀회의’를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팀은 지재문제에 관한 테마 연구를 하고 그 성과는 간행물로 환원하며, 2017년 테마는 ‘대만 직무규정상의 지식재산 취급’이었습니다. 또한 단속당국에 대한 협력으로는 세관·경찰직원에 대한 진위감정연수회 개최, 일본계 기업의 대만에서의 등록상표를 정리한 상표권리집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IPG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일본대만교류협회의 후쿠무라 주임은 ‘IPG활동은 일본계 기업의 적극적인 참가·협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대만 일본계 기업을 연간 20개사 이상 방문해 지재에 관한 현황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실제로 기업을 방문해 보면 의외로 지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기업이 많은 데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한국 IPG도 올해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방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 IPG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①2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출처:한국 특허청 2018년 1월 2일자 보도자료)

2016년도 건의사항 결과 보고


한국 IPG에서는 서울재팬클럽(SJC)이 매년 실시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애로사항을 정리한 건의사항 중 지식재산권에 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지식재산권분야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10가지 항목을 한국정부에 제출했고, 지난 10월 23일에 답변을 받았으므로 보고합니다.

2016년도 지식재산권분야건의사항

#	카테고리	건의내용	신규/계속	한국정부 답변	(참고) 2015년 한국정부 답변
1	①	무효심판 소송시 이유 및 증거 보충의 제한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2	②	수출에 대한 권리행사의 가능화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3	②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4	②	간접침해규정의 확충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5	③	외국어출원 인정	신규	장기검토	-
6	③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의 답변기간/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의 장기화	계속	장기검토	장기검토
7	④	특허권 존속연장제도에 있어 외국임상시험 기간의 가산, 보완기간 등의 산입	계속 (일부 신규)	미수용	미수용
8	④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적정화 및 IMD 폐지	계속	미수용	미수용
9	④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Patent Linkage)의 문제점	계속	미수용	미수용
10	④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규정의 재검토	계속	미수용	-

[카테고리] ①지재권 권리행사 ②지재권보호 강화 ③특허청의 심사·심판 ④보건·위생

이번에 중점사항으로 건의한 안건은 상기 표의 5번 ‘외국어출원 인정’ 및 7번 ‘특허권 존속연장제도에 있어 외국임상시험 기간의 가산, 보완기간 등의 산입’입니다. 5번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어로는 영어만 인정되고 있는데, 언어의 확대는 걱정된 심사처리건수나 심사품질 향상 등을 달성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7번에 대해서는 미수용이라는 답변이었지만, 한국 특허청이 곧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표할 예정 (2017년 12월 14일자 한국 특허청 보도자료)이므로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건의사항 내용, 한국정부의 답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재팬클럽, SJC자료실

<http://www.sjchp.co.kr/whats/whats4.php>



KOREA IP NEWS

※제로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상표권자, 직구족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주의 필요 | 한국관세청(2017.9.4)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 피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이 그 다음으로 많아,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② 특허청, 벤츠·BMW 등 위조 자동차 휠 판매조직 검거 | 한국특허청(2017.9.19)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점(110억 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200억 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③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 | 한국특허청(2017.9.22)

특허청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6개월→12개월)하고,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 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주장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⑤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폐

| 한국특허청(2017.12.5)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증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17.7)에 들어갔고,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18.3)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18.1)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IPB

File No.108

한국의 전자소송 소개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며, 소장 접수 이후 수많은 종이서류를 작성해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서면접수를 해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 등으로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자소송이 실시되고 있어, 종이서류가 아닌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분쟁에 직면하였을 경우,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많은 걱정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시행하는 전자소송 제도의 개요와 외국기업 입장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전자소송의 도입 연혁

한국 법원이 전자소송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10년 4월이다. 이때 처음으로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처음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2011.5. 민사본안사건에 전자소송을 확대하였고, 2013.1.가사소송 및 행정사건, 2013.9. 보전처분, 2014.4. 회생,파산사건, 2015.사군법원 사건, 2015.3. 민사집행 및 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한국 법원은 여러해 전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판의 능률과 국민의 사법신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처럼 한국 법원은 과감한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예산투입 대비 국민만족도를 극대화하여, 투명성과 신속성, 청렴성 등 모든 분야에서 OECD내 사법 신뢰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전자소송의 장점

한국 법원의 전자소송은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려는 것이다. 전자소송의 장점은 첫째 매우 신속하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사건처리와 전자문서 송달로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재판기일 지정이 가능하다. 둘째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기록열람 복사절차도 무척 간단하다. 셋째 진행되는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가 투명해지고,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개인정보가 첨단기술로 보호되므로 서류 분실이나 외부유출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다.

3. 전자소송의 준비

전자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회원가입 절차는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된다.


그리고 실제 전자소송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실명 확인, 제출서류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한다.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전자소송 이용방법

일반 소송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소송이라 해도 공판심중주의 및 구두변론주의의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변론기일의 운영이나 증거조사 등의 일반적 소송절차는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열람 및 발급도 가능하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5. 마무리

이처럼 7년전 한국 특허법원에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 시스템은 IT나 바이오 관련 특허분쟁시 재판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및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민사소송의 80% 이상이 종이없는 전자소송이 되었으며, 특히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기업간 분쟁사건은 거의 100%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한국 법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한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건의 전자소송 절차를 먼저 알아보고, 편리하게 대응할 것을 권한다. 



〈이번호 해설자〉

정진섭 법률사무소 SOUL대표

변호사, 변리사, 법학박사, 전 경희대 법대 교수, 대한중재인협회 지식문화산업포럼위원
(감수: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하마키시 히로아키)

File No.109

어린이 발명교육에 주력하는 한국정부 -발명교육법의 시행-



한국정부는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지원·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 및 동 시행령을 2017년 9월 15일에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각 지역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명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한층 더 발명교육을 활성화시켜 자라나는 발명 꿈나무들의 창의성 육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에 시행된 발명교육법의 개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발명 교육법의 목적

발명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암기형 교육이 아닌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이 있었으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할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발명교육법'을 통해 유치원·초중고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발명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1)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5)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장 및 각 지역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수립된 발명교육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또한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3.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6조)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발명활동의 촉진(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발명과정 등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지원, 발

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등, 학생 대상의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제10조)

한국특허청과 시도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학생 대상의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곳)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발명교사의 연수, 교육 실적자료의 작성·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해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학교의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게 되었습니다.


7.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운영 등(제11조)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과정 등 체계적인 연구와 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8.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12조)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가 있으며, 산업재산권 연구소를 대학등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국가 전반의 발명교육의 위상과 방향성이 명확해졌으며 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에 대한 예산배분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교육법 및 시행령의 번역은 당 사무소 홈페이지(<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하마기시 히로야키(특허청 파견) 1998년 특허청 입청, 정보처리분야 심사관·심판관, 국제과 과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지식재산활용 기획조정관 역임, 2017년 6월부터 현직